

#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94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20. 7. 2. 시행)으로 상품권의 발행·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에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내용을 함께 규정한다는 것을 목적에 정함(안 제1조)
- 나.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·제4조)
  - 1) 종이형 권면금액, 상품권 기재사항 정함
  - 2)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을 정함
- 다. 판매대행점과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  - 1)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서 내용
  - 2)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,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
- 라.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·제7조)
  - 1)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,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 공개
  - 2) 가맹점 제한 업종, 가맹점 자격 요건
- 마. 상품권 잔액환급 비율 정함(안 제8조)
- 바. 상품권 이용 활성화사업 정함(안 제9조)
- 사. 상품권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2021년도 예산 145,000천원 확보예정

#### 다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: 2020. 8. 28.~9. 17.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붙임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5)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모델 전부 반영함

##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,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5,000원권
2. 10,000원권

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권면금액
2.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
3.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
4.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

5. 사용자 이용안내

6.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)** 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.

1.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

2.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

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.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.

**제5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등)**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약 기간

2. 의무 이행 사항

3.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
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**제6조(가맹점의 등록)**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

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
2.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
3.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
4.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

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
2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

**제7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**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**제8조(거창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)**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.

**제9조(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)**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,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
2. 거창사랑상품권 홍보
3.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.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.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,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.

4.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**제10조(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)**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거창사랑상품권 발행·유통 시스템의 운영·유지·보수에 관한 업무
2.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탁·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.

#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비용 발생 요인: 상품권 발행 및 운영, 판매, 할인 수수료 등
- 나. 관련조문
  - 1) 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,
  - 2) 제9조(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등)
  - 3) 제10조(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)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균비	496	145	145	145	145	1,076

### 3. 관련 의견

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2020년 예산: 상품권 발행 및 운영, 수수료 등 496백만원

2. 2021년도 이후 예산

- 가. 상품권 할인 판매지원: 90,000천원
- 나. 판매·환전 수수료: 15,000천원
- 다. 상품권 제작 및 홍보비용: 26,500천원
- 라. 시스템 유지·관리: 13,500천원

작성자: 경제교통과장 박래만